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3414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중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창희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31.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에 관하여 2020. 3. 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19,940,93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9,940,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,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현철

별지